

의안번호	2214797
의 퇴 인	용혜인의원
회 답 일	2026.2.6.
추계번호	25D6593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0억 3,900만원 등 3년간 총 225억원(연평균 75억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	9,039	8,903	4,558	22,500	7,500

주: 본 추계는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규모를 진화위 정원 대비 50%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이며, 실제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과정에서 정원, 직급 등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	의무규정
2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8명 및 시민단체와 학계가 추천하는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국회의장이 정당의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2명,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최초로 제24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함.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위원회는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의무규정
4	안 제17조 (위원회의 정원 등)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5	안 제18조 (소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진상조사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9조 (사무처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의무규정
7	안 제20조 (자문기구의 설치)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23조 (공무원 등의 파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30조 (청문회의 실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35조(검증)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40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	—
2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	—
3	안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	—
4	안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	—
5	안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	—
6	안 제19조(사무처의 설치)	○	—
7	안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	—
8	안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	—
9	안 제30조(청문회의 실시)	○	—
10	안 제35조(검증)	○	—
11	안 제40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조직을 참고하여 그 규모를 추정하고,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로 구분하여 추계함

-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는 상임위원의 직급과 인원, 위원회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라 함)와 유사한 조직 형태로 설립되는 것으로 가정함
- 다만, 제정안은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을 60명 이내로 정하고 있고¹⁾,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와 진화위 간 조사대상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규모는 진화위(정원 136명)의 50% 수준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 위원회의 인건비는 진화위의 2022년~2025년 인건비 예산액 평균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고,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인건비 대비 각각의 비중을 적용하며,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곱하여 추정함²⁾
-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³⁾에서 최대 조사기간을 2년 이내로, 종합보고서 작성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년 6개월로 함

1) (제정안)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정부기관 자산취득비 전망 (2025.1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자산취득비 단가(천원)	4,980	5,078	5,180	5,2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4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 완료 후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인건비는 최근 4년(2022~2025년) 진화위의 평균 인건비에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최근 4년간 진화위 평균 인건비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와 사업비 비중은 다음과 같음

[표 2] 진화위 예산내역: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평균 (2022~2025)
인건비	5,251	6,094	6,520	6,811	6,169 (100%)
기본경비	5,924	5,954	6,800	6,686	6,341 (102.8%)
사업비	2,566	7,029	3,429	3,266	4,073 (66.0%)
합계	13,741	19,077	16,749	16,763	16,583

주: 2020년과 2021년은 인력과 사업이 모두 반영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므로 제외함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진화위의 정원 대비 50% 수준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건비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3] 인건비 추가재정소요: 2027~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합계
인건비	3,234	3,312	1,696	8,242

주: 2029년은 추계기간이 6개월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산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기본경비 및 사업비

-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진화위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중(102.8%)과 사업비 비중(66.0%)을 적용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연도별 인건비에 각각의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한 위원회의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4] 기본경비와 사업비의 추가재정소요: 2027~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합계
기본경비	3,325	3,405	1,743	8,473
사업비	2,135	2,186	1,119	5,4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자산취득비

-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자산취득비는 위원회의 정원(진화위 정원의 50%인 68명)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자산취득비는 위원회 설치 첫해(2027년)에만 발생하며 이후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표 5] 자산취득비의 추가재정소요: 2027~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합계
자산취득비	345	—	—	3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0억 3,900만원 등 3년간 총 225억원으로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합계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인건비	3,234	3,312	1,696	8,242
	기본경비	3,325	3,405	1,743	8,473
	사업비	2,135	2,186	1,119	5,440
	자산취득비	345	—	—	345
	합계	9,039	8,903	4,558	22,500

주: 본 추계는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규모를 진화위 정원 대비 50%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이며, 실제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과정에서 정원, 직급 등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조직규모를 진화위 정원 대비 50%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이며,
실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과정에서 정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